

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시설·장비 및 인력 기준(제7조의6제1항 관련)

1. 시설: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를 갖추되, 창고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.
 - 가.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와 구획되어야 한다.
 - 나. 환기 및 잠금 설비가 있어야 한다.
2. 장비
 - 가. 동력분무기 1대 이상
 - 나. 고압세척기 2대 이상
 - 다. 분말살포기(입자 및 분무) 2대 이상
 - 라. 수동식 분무기 2대 이상
 - 마.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
 - 바. 보호용 의복(상·하) 5벌 이상
 - 사. 진공청소기, 세척용 노즐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·기구
 - 아. 장비와 인력의 출장 시공 업무가 가능한 차량(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시설출입차량으로 등록된 차량) 1대 이상
3. 인력: 대표자 외에 업무 종사자 1명 이상